

「계좌통합관리서비스」이용약관

1. 개정시행(예정)일 : 2018 년 9 월 21 일(금)

2.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제 1 조(목적) (생 략)</p> 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~7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 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 설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 3 조(이용대상) ~ 제 4 조(홈페이지 이용방법) (생 략)</p>	<p>제 1 조(목적) (좌 등)</p> 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~7. (좌 등)</p> <p><u>8. '바이오정보'란 지문, 얼굴,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.</u></p> <p><u>바이오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.</u></p> <p><u>9. '바이오인증'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하며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(좌 등)</p> <p>제 3 조(이용대상) ~ 제 4 조(홈페이지 이용방법) (좌 등)</p>	<p>- 바이오인증 관련 용어정의 신설</p> <p>- 바이오인증 관련 용어정의 신설</p>

<p>제 5 조(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)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</p> <p>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,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④ ~ ⑤ (생 략)</p> <p>제 6 조 ~ 제 8 조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 5 조(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)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 <u>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</u>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</p> <p>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, <u>바이오인증과</u>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,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(좌 동)</p> <p>④ <u>바이오인증 5 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 1 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⑤ ~ ⑥ (좌 동)</p> <p>제 6 조 ~ 제 8 조 (생 략)</p> <p><u>제 9 조(고객의 개인정보보호)</u></p> <p>① <u>은행은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(기관)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, 이용 또는 제공(전달)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.</u></p>	<p>- 애플리케이션 이용시 인증수단으로서 바이오인증 추가</p> <p>- 애플리케이션 로그인방식에 바이오인증 추가</p> <p>- 바이오인증 5 회이상 오류시 재등록절차 추가</p> <p>- 항 체하</p> <p>- 외부기관의 무단 스크래핑 방지 문구 신설</p>
--	--	--

<p>제 <u>9</u> 조 ~ 제 <u>11</u> 조 (생략)</p>	<p>② <u>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(기관)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제 <u>10</u> 조 ~ 제 <u>12</u> 조 (생략)</p>	<p>- 조체하</p>
--	--	--------------